

의안번호	2202707
의 퇴 인	조경태의원
회 답 일	2024.10.16.
추계번호	24D2699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도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억 2,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7억 8,000만원(연평균 11억 5,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도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0조)	821	838	856	874	891	4,280	856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 수립(안 제12조)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합 계	1,121	1,138	1,156	1,174	1,191	5,780	1,156

주: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제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시·도의 통합절차)	-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합을 건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제1항, 제2항) - 통합을 추진하려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제3항) -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10조(시·도 통합지원위원회)	- 시·도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둠(제1항) - 시·도 통합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시·도통합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제4항) - 시·도 통합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둠(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11조(관할 구역 변경을 위한 협의체)	-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을 원활히 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 내 관할구역 변경 대상 시·군 간에 협의체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12조(중앙 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광역시와 시·군·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23조(예산 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국가는 시·도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시·도 또는 통합 시·도에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국가는 시·도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통합 시·도에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24조(지방 교부세 산정에 대 한 특례)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광역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특별광역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1항) - 교육부장관은 특별광역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특별광역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사무를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에 이양하는 경우 이양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특별광역시 또는 시·군·구에 교부하여야 함(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25조(통합 시·도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 국가는 특별광역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특별광역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제1항) - 국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시·도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시·도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함(제2항) -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시·도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8	안 제28조(조세의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양도세·관세·상속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29조(균형발전기금)	- 특별광역시장은 특별광역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특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제1항) - 기금의 재원 및 용도 등은 특별광역시 조례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주. 제정안 제15조~제18조에 따른 사무의 이관에 관한 내용은 제정안 제16조에서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26조에 따른 국토개발을 위한 특례도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특별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제정수반요인에 포함하지 않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시·도의 통합절차)	×	현재 시점에서 통합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향후 설치될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수, 사무기구의 규모·주민투표 비용 등을 추정 곤란
2	안 제10조(시·도 통합지원위원회)	○	-
3	안 제11조(관할구역변경을 위한 협의체)	×	현재 시점에서 통합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할구역 변경 대상 시·군의 수, 협의체 규모 등을 추정 곤란

4	안 제12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	-
5	안 제23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현재 시점에서 통합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통합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을 추정 곤란
6	안 제24조(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	×	현재 시점에서 통합을 추진하려는 시·도, 국가의 이양사무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증가규모, 국가의 이양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
7	안 제25조(통합 시·도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통합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추가 지원해야 하는 보통교부세 규모 등을 추정 곤란
8	안 제28조(조세의 감면)	×	특별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 감면 규모를 구체화할 수 없어 재정수입 감소액의 추계 곤란
9	안 제29조(균형발전 기금)	×	기금의 재원, 용도 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기금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0조의 시·도통합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¹⁾의 2024년 위원회 및 지방시대기획단²⁾의 운영 예산 금액을 준용하여 추계함
- 안 제12조에 따른 이양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중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14.(생략)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하며, 정책연구용역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준용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³⁾를 적용함
-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시·도통합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예산을 준용하면, 2026년 8억 2,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2억 8,000만원이 추계됨
 -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2024년 예산금액(7억 8,600만원)⁴⁾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표 2] 시·도통합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도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821	838	856	874	891	4,2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이양계획 수립(안 제12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이양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준용함
 - 2024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7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6	2.2	2.2	2.1	2.1	2.1	2.0

4) 세부사업 지방시대위원회 운영(1132-325) 중 내역사업 위원회 기본운영(5억 3,500만원), 위원회 회의운영(2억 5,100만원)

관한 정책연구용역 예산⁵⁾ 3억원을 준용하여 추계

[표 3] 이양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이양계획 수립	300	300	300	300	300	1,5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시·도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양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억 2,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7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도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821	838	856	874	891	4,280
이양계획 수립	300	300	300	300	300	1,500
합 계	1,121	1,138	1,156	1,174	1,191	5,7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5) 세부사업 지방시대위원회 운영(1132-325) 중 내역사업 지방시대 정책연구(3억원)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